

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대안교육연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센터 1동 309호 02-6358-0081~3 <http://www.psae.or.kr>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정책 제안서 (2017. 3. 31)

**‘학습권이란
읽고 쓸 권리며
질문하고 분석할 권리며
교육의 수단을 얻을 권리며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발달시킬 권리’**

-1985년 3월 29일 제4회 유네스코(UNESCO) 국제성인교육회의의 학습권선언

1

청소년의 '학교 밖 학습' 을

법률로 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초·중·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누적 기준 36만 여명으로 추산됩니다. (2015, '관계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등에서 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2015년 발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입법과정에서 '학교 밖에는 교육이 없다'라는 교육부의 시각이 반영된 법률입니다. 정규 학교의 문을 나서는 순간 청소년들의 배움이 중단된 것으로 보는 교육부의 시각은 이 법률 제9조(교육지원) 조항에 그대로 표현되었습니다. 명칭도 무색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할 방법은 정규 학교로 되돌아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지원을 보장할 수 있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배움을 '학교 밖 학습'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한 헌법 제31조1항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2016년 부천 초등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 문제를 이슈화하고 학교복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 문제를 학교 안에서 풀 수는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이 걱정이라면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하는 현재적 공간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을 병행 개정하여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청소년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교 밖의 학습 공간에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에게는 학교취학의 의무 대신 「교육의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은 헌법 제31조2항의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을 학교 취학의 의무로 해석하고 이 법률 제68조에 취학의무 미이행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로 행정 집행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 양쪽에 교육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취학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한 의무교육제도 초기의 결정이며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학습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한다면 그 부모는 교육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의무 이행여부는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공간을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사업비' 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해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을 공모심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공간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모심사방식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학습계획을 세울 수 없게 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비를 인원 수 만큼 개별 지원 형태로 지급 하되 반드시 배우는데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할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정규 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대안교육연대현장 · 서울권역 공간민들레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꿈틀학교 내일새싹학교 숲나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서울꽃피는학교 성미산학교 성장학교별 여명학교 아름다운학교 하자작업장학교 ·**경기인천권역** 고양우리학교 고양자유학교 과천맑은샘학교 광명범씨학교 꿈틀자유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버리학교 불이학교 산돌학교 산어린이학교 산올어린이학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수지꿈학교 안양발도르프학교 열음학교 인천발도르프학교 중등무지개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초등무지개학교 파주자유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하나인두드림자유학교 하남꽃피는학교 ·**충청권역** 금산간디학교 느티울행복한학교 대전꽃피는학교 옥천꽃피는학교 제천간디학교 ·**광주전라권역** 곡성온리원 스쿨 광주도시속참사람학교 늦봄문익환학교 사랑어린이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지혜학교 ·**경상권역** 거침없는우다다학교 은새미학교 부산꽃피는학교 산청간디중학교 산티학교 ·**강원권역** 삼무곡청소년예술마을 참꽃작은학교 ·**제주** 보물섬학교 ·**기타** 필리핀간디국제학교